

부산지방법원 2021. 12. 22 선고 2021가단3369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2. 22.

주 문

1. 피고들과 D 사이에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1) 2021. 3. 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,243,4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,243,4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기재 ‘공동하여’를 ‘연대하여’로 고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경수

별지

1) 원소가 제출한 소장에는 이 부분 청구취지가 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’라고 기재되어 있으나,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면, 이는 ‘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’의 착오기재로 보인다.